

개표참관인신고서

1.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
2. 참관인

성명	생년 월일	성별	주소	전화 번호	직업	우편투표함등 이송참관여부	비고

위와 같이 개표참관인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	{	○	○	당	[인]	}				
	{	대	표	자	○ ○ ○		(인)			
	{	후	보	자	○ ○ ○		(인)			
	{	선	거	사	무		장	○ ○ ○	(인)	
		○ ○	선	거	연	락	소	장	○ ○ ○	(인)

○○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- 주: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·미성년자·선거권이 없는 사람(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·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(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.
2. 이 신고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해당 정당의 대표자(정당선거사무소장)·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이,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이 할 수 있습니다.
3. 하나의 구·시·군위원회에 2개소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표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(예 : 제1개표소 개표참관인신고서).
4. 국회의원선거에서 구·시·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·신고할 수 있습니다.
5. 교체신고 시에는 "비고"란에 이미 신고된 자 "○○○과 교체"라 표시하여야 합니다.
6. 구·시·군위원회가 우편투표함등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 참관할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"우편투표함등 이송참관여부"란에 "√"표합니다.

